

제 2375호
2015. 06. 1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제2015-44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15-441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440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안전, 사회복지 분야 등 기능강화 분야 인력확충을 위한 정원확보 및 도심가로환경의 수준 향상을 위한 조경녹지 분야 임기제 공무원의 직급조정을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확보를 위한 방재안전 직렬 정원 신설 : 8급 1명
 - 행정자치부 재난안전 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방재안전 직렬 신규채용을 위한 정원 신설
 - 타 직렬 정원 상계 조정을 통한 필요인력 정원 증원
 - [감축] 기계운영 8급 1 → [증원] 방재안전 8급 1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정원 증원 : 2명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위한 행정자치부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신규임용을 위한 정원(2명) 추가 확보
 - 기능 감소 직렬 퇴직정원 정비를 통한 정원 증원
 - [감축] 시설관리 8급 2 → [증원] 사회복지 8급 2

□ 조경녹지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직급 조정

- 임기제 지방녹지(조경녹지) 9급 1명 → 임기제 지방녹지(조경녹지) 8급 1명
- [감축] 임기제 지방녹지 9급 1 → [증원] 임기제 지방녹지 8급 1

정원 조정내역

감 축			
직렬 · 직급	정원		
	현행	개정	증감
계			△4
기계운영 8급	2	1	△1
시설관리 8급	7	5	△2
임기제녹지 9급	1	0	△1



증 원			
직렬 · 직급	정원		
	현행	개정	증감
계			+4
방재안전 8급	0	1	+1
사회복지 8급	13	15	+2
임기제녹지 8급	0	1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 전화:3396-4513, FAX:3396-4311, 메일:lsy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5	20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임기제 의무(의사)		7			7	
행정 또는 임기제 행정(감사)		1	1			
6급 소계		229	171	3	20	35
행정		150	109	3	8	30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5			5	
환경		1	1			
시설(토목6,건축6,지적3)		15	15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위생		1	1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임기제 보건진료(의사)		3			3	
임기제 시설(디자인)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60	274	9	30	47
행정		204	150	6	9	39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4, 전기4, 화공3)		11	11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7	3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4			4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1, 지적6)		31	31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1, 영사1)		2	2			
농림운영(원예)		2	2			
사무운영(워드)		1				1
임기제 시설(건축)		1	1			
임기제 시설(도시계획)		1	1			
임기제 전산(전산디자인)		1	1			
임기제 시설(교통)		2	2			
임기제 시설(디자인)		1	1			
임기제 의료기술(물리치료)		1			1	
임기제 행정(홍보)		1	1			
임기제 행정(평생교육)		1	1			
8급 소계		346	256	2	28	60
행정		186	133	2	5	46
세무		32	32			
사회복지		15	6			9
전산		5	5			
방호		4	4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4	4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34	34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시설관리		5	5			
운전		6	6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5, 전산1)		6	1			5
임기제 시설(교통)		1	1			
임기제 전산(전산)		1	1			
임기제 행정(언론홍보)		1	1			
임기제 행정(영사)		1	1			
임기제 행정(기록물관리)		1	1			
임기제 녹지(조경녹지)		1	1			
9급 소계		202	124	6	13	59
행정		50	20	2		28
세무		6	6			
사회복지		14	11			3
전산		2	1		1	
방호		13	12	1		
공업(기계4, 전기5)		9	9			
녹지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전기운영(전기)		8	8			
기계운영(기계)		4	2	1		1
사무운영(워드)		23	10		1	12
임기제 식품위생(영양사)		1			1	
임기제 공업(전기관리)		1	1			
임기제 행정(사진촬영)		1	1			
임기제 녹지(조경녹지)		0	0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p>							<p>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p>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5	20	1		14	행정		35	20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임기제 의무(의사)		7			7		임기제 의무(의사)		7			7	
행정 또는 임기제 행정(감사)		1	1				행정 또는 임기제 행정(감사)		1	1			
6급 소계		229	171	3	20	35	6급 소계		229	171	3	20	35
행정		150	109	3	8	30	행정		150	109	3	8	30
세무		14	14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사회복지		6	4			2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녹지		3	3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5			5		간호		5			5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15	15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15	15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위생		1	1				위생		1	1			
운전		3	3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임기제 보건진료(의사)		3			3		임기제 보건진료(의사)		3			3	
임기제 시설(디자인)		1	1				임기제 시설(디자인)		1	1			

현행						개정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7급 소계		360	274	9	30	47	7급 소계		360	274	9	30	47
행정		204	150	6	9	39	행정		204	150	6	9	39
세무		21	21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3	3				전산		3	3			
속기		3		3			속기		3		3		
방호		6	6				방호		6	6			
공업(기계4, 전기4, 화공3)		11	11				공업(기계4, 전기4, 화공3)		11	11			
녹지		3	3				녹지		3	3			
수의		1	1				수의		1	1			
보건		7	3		4		보건		7	3		4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4			4		의료기술		4			4	
환경		1	1				환경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9			9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1, 지적6)		31	31				시설(토목14, 건축11, 지적6)		31	31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1, 영사1)		2	2				기계운영(기계1, 영사1)		2	2			
농림운영(원예)		2	2				농림운영(원예)		2	2			
사무운영(워드)		1				1	사무운영(워드)		1				1
임기제 시설(건축)		1	1				임기제 시설(건축)		1	1			
임기제 시설(도시계획)		1	1				임기제 시설(도시계획)		1	1			
임기제 전산(전산디자인)		1	1				임기제 전산(전산디자인)		1	1			
임기제 시설(교통)		2	2				임기제 시설(교통)		2	2			
임기제 시설(디자인)		1	1				임기제 시설(디자인)		1	1			
임기제 의료기술(물리치료)		1			1		임기제 의료기술(물리치료)		1			1	
임기제 행정(홍보)		1	1				임기제 행정(홍보)		1	1			
임기제 행정(평생교육)		1	1				임기제 행정(평생교육)		1	1			
8급 소계		345	255	2	28	60	8급 소계		346	256	2	28	60
행정		186	133	2	5	46	행정		186	133	2	5	46
세무		32	32				세무		32	32			
사회복지		13	4			9	사회복지		15	6			9
전산		5	5				전산		5	5			
방호		4	4				방호		4	4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4	4				녹지		4	4			
보건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간호		13			13	
환경		2	2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34	34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34	34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위생		1	1			
시설관리		7	7				시설관리		5	5			
운전		6	6				운전		6	6			

현 행						개 정 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2	2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5, 전산1)		6	1			5	사무운영(워드5, 전산1)		6	1			5
임기제 시설(교통)		1	1				임기제 시설(교통)		1	1			
임기제 전산(전산)		1	1				임기제 전산(전산)		1	1			
임기제 행정(언론홍보)		1	1				임기제 행정(언론홍보)		1	1			
임기제 행정(영사)		1	1				임기제 행정(영사)		1	1			
임기제 행정(기록물관리)		1	1				임기제 행정(기록물관리)		1	1			
9급 소계		203	125	6	13	59	9급 소계		202	124	6	13	59
행정		50	20	2		28	행정		50	20	2		28
세무		6	6				세무		6	6			
사회복지		14	11			3	사회복지		14	11			3
전산		2	1		1		전산		2	1		1	
방호		13	12	1			방호		13	12	1		
공업(기계4, 전기5)		9	9				공업(기계4, 전기5)		9	9			
녹지		2	2				녹지		2	2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운전		44	21	2	6	15
전기운영(전기)		8	8				전기운영(전기)		8	8			
기계운영(기계)		4	2	1		1	기계운영(기계)		4	2	1		1
사무운영(워드)		23	10		1	12	사무운영(워드)		23	10		1	12
임기제 식품위생(영양사)		1			1		임기제 식품위생(영양사)		1			1	
임기제 공업(전기관리)		1	1				임기제 공업(전기관리)		1	1			
임기제 행정(사진촬영)		1	1				임기제 행정(사진촬영)		1	1			
임기제 녹지(조경녹지)		1	1				임기제 녹지(조경녹지)		0	0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비서		1	1			
전문위원		2		2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비서		3	1	2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441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변동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장 직렬 조정**
 - 공무원 직종개편(계약직 → 임기제)에 따른 감사담당관 보임직렬 조정(안 제3조)
 - 조직개편 및 건강관리분야 기능강화에 따른 건강관리과장 보임직렬 확대(안 제36조)
 - 건강관리과장 보임 직렬에 지방행정사무관 신설(추가)
- 보건의료 신규 사업 분야 추진 근거 마련(안 제37조)**
 - 보건지소 운영 및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 신설
- 효율적 보건의료행정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업무 조정(안 제39조, 제40조)**
 -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성 강화위해 의약전문부서인 의약과로 업무 이관
 - 감염병 관리 및 예방 강화를 위해 의약과 검진업무 건강관리과로 이관
 - 주민건강육구 유사분야 관리부서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여관동), 문의 전화:3396-4513, FAX:3396-4311, 메일:lsy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36조 중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을 “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

제37조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 13.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제39조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 1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 15.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 16. 방사선 촬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 17. 국가암 검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 18.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 19. 임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제40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개정 2015.07.01.)

같은 조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청소년·학교보건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21.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2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p> <p>제3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1.4.22)</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p> <p>제3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지방임기제 공무원</u>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p>

현행	개정안
<p>제36조(보건소)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의무 또는 보건)으로 보하고, 건강도시과장·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36조(보건소)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의무 또는 보건)으로 보하고, 건강도시과장·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07.01.)</p>
<p>제37조(건강도시과)건강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 1. 2, 2009.12.10, 2013.2.20)</p>	<p>제37조(건강도시과)건강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 1. 2, 2009.12.10, 2013.2.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보건기획, 평가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 2. 인사, 복무, 관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회계(계약·지출)에 관한 사항 4.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료비 징수 및 진단서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보건소 청사·차량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 2) 7. 보건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도시 공공 보건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 2) 9. 보건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10, 개정 2011.11.18) 10. 금연운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10, 개정 2011.11.18) 11. 삭제 <2011.11.1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보건기획, 평가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 2. 인사, 복무, 관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회계(계약·지출)에 관한 사항 4.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료비 징수 및 진단서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보건소 청사·차량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 2) 7. 보건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도시 공공 보건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 2) 9. 보건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10, 개정 2011.11.18) 10. 금연운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10, 개정 2011.11.18) 11. 삭제 <2011.11.18.> 12.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01) 13.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01)

현행	개정안
제39조(건강관리과)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 1. 2, 2009.12.10, 2011.6.22, 2013.2.20)	제39조(건강관리과)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 1. 2, 2009.12.10, 2011.6.22, 2013.2.20)
1.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1.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2. <u>청소년·학교보건에 관한 사항</u> (개정 2011.11.18)	2. 삭제<2015.07.01.>
3.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3.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4. 예방접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방접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	5.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
6. 노인보건·치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6. 노인보건·치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7. <u>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u>	7. 삭제<2015.07.01.>
8.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10)	8.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10)
9. 급성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10, 개정 2011.6.22)	9. 급성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10, 개정 2011.6.22)
1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10)	1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10)
11. 신종감염병 및 재출현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18)	11. 신종감염병 및 재출현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18)
12.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1.18)	12.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1.18.)
	13. <u>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에 관한 사항</u> (신설 2015.07.01.)
	14. <u>「잔류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u> (신설 2015.07.01.)
	15. <u>「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u> (신설 2015.07.01.)
	16. <u>방사선 촬영에 관한 사항</u> (신설 2015.07.01.)
	17. <u>국가암 검진에 관한 사항</u> (신설 2015.07.01.)
	18. <u>건강검진에 관한 사항</u> (신설 2015.07.01.)
	19. <u>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u> (신설 2015.07.01.)

현행	개정안
제40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 1. 2, 2009. 3.20)	제40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 1. 2, 2009. 3.20)
1.«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1.«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2.«안마사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2.«안마사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5.«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5.«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1차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7. 1차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8.«지역보건법»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8.«지역보건법»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9.«약사법»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9.«약사법»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의약품 수급 및 조제에 관한 사항	11. 의약품 수급 및 조제에 관한 사항
12.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에 관한 사항	12. 삭제<2015.07.01.>
1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13. 삭제<2015.07.01.>
1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14. 삭제<2015.07.01.>
15. 방사선 촬영 및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15.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개정 2015.07.01.)
16.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신설 2007.1.2, 개정 2011.11.18)	16.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신설 2007.1.2, 개정 2011.11.18)
17. 주민의 영양개선 및 운동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18)	17. 주민의 영양개선 및 운동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18)
18.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18)	18.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18)
19. 만성질환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18)	19. 만성질환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18)
	20. 청소년학교보건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21.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2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